

교습비등 게시표

2020년 5월 11일 현재

□ 교습비

| 교습과목 | 총교습시간(시간/주) | 정원(반당) | 교습비 | 징수단위(월, 분기)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영어회화 | 5시간 | | 300,000원 | 1개월 |
| 영작 | 5시간 | | 300,000원 | 1개월 |
| 토익A | 12.5시간 | | 300,000원 | 1개월 |
| 토익B | 7.5시간 | | 300,000원 | 1개월 |
| 토플 | 10시간 | | 600,000원 | 1개월 |
| 토플A | 7.5시간 | | 600,000원 | 1개월 |
| 아이엘츠 | 10시간 | | 600,000원 | 1개월 |
| 아이엘츠A | 7.5시간 | | 600,000원 | 1개월 |
| 토스B | 4시간 | | 300,000원 | 1개월 |
| 토스A | 6시간 | | 300,000원 | 1개월 |
| 문법 | 5시간 | | 300,000원 | 1개월 |
| 오픽A | 6시간 | | 300,000원 | 1개월 |
| 오픽B | 4시간 | | 300,000원 | 1개월 |

□ 교습비등 반환기준
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 |
|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 | 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| | 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| 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
|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| | 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
| 비고 |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 | |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0년 5월 11일

설립·운영자 유니언 에듀케이션 주식회사 (서명·도장인)

